

의안번호	2211774
의 퇴 인	정청래의원
회 답 일	2025.8.7.
추계번호	25D402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50만원씩 총 1,25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법관평가위원회 (안 제44조의2)	민간위원	10	10	10	10	10	-	-
	회의횟수	1	1	1	1	1	-	-
	회의참석수당	0.25	0.25	0.25	0.25	0.25	-	-
	추가재정소요	2.5	2.5	2.5	2.5	2.5	12.5	2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2 (근무성적 등의 평정)	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(評定)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둠(제1항)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2.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. 법원 내부 구성원 5명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4조의2 (근무성적 등의 평정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관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,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안 제44조의2제1항¹⁾은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, 법률가단체 추천 5명,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
 - － 국회 교섭단체와 법률가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은 민간위원으로 가정함
 - 법관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현행법에 따른 법관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횟수와 같이 연 1회로 하며,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²⁾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

[표 2] 법관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횟수: 2020~2024년

(단위: 회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횟수	1	1	1	1	1	1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법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수(10명)에 회의횟수(연 1회)와 회의참석수당 단가(25만원)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
1) 제44조의2(근무성적 등의 평정)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(評定)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둔다.

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
 2.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
 3. 법원 내부 구성원 5명

2)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기획재정부)

·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 ·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50만원씩 총 1,25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법관평가위원회 (안 제44조의2)	민간위원	10	10	10	10	10	—	—
	회의횟수	1	1	1	1	1	—	—
	회의참석수당	0.25	0.25	0.25	0.25	0.25	—	—
	추가재정소요	2.5	2.5	2.5	2.5	2.5	12.5	2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현행 법관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횟수, 회의참석수당 등 법관 평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61	jsy@na.go.kr